

[붙임]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

1.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가. 개정내용

- 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의 치기공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8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8”로 한다.
  - 같은조 호텔관광서비스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2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2”로 한다.
  - 같은조 외식조리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8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8”로 한다.
  - 같은조 미용피부화장품학과 입학정원 야간 “20”을 “14”로 하고, 계 “20”을 “14”로 한다.
  - 같은조 합계 입학정원 야간 “280”을 “262”로 하고, 계 “280”을 “262”로 한다.
  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 분	내 용					
현행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
	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
			주	야	계	
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	20	20	2
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	40	40	1
	간호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유아교육학과	인문사회		20	20	1
	<u>치기공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1
	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	인문사회		<u>20</u>	<u>20</u>	2
	방사선학과	자연과학		20	20	1
	식품영양학과	자연과학		20	20	2
	<u>외식조리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2
	<u>미용피부화장품학과</u>	자연과학		<u>20</u>	<u>20</u>	2
	임상병리학과	자연과학		20	20	1
의무행정학과	자연과학		20	20	1	
<b>합 계</b>			<b>280</b>	<b>280</b>		

구 분	내 용					
개정(안)	제5조의2(전공심화과정 설치) 우리대학에 두는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
	모집단위(계열·학과명)	대계열분류	입 학 정 원			수업연한
			주	야	계	
	사회복지학과	인문사회	20			2
	물리치료학과	자연과학	40			1
	간호학과	자연과학	20			1
	치위생학과	자연과학	20			1
	유아교육학과	인문사회	20			1
	<u>치기공학과</u>	자연과학	<u>18</u>			1
	<u>호텔관광서비스학과</u>	인문사회	<u>12</u>			2
	방사선학과	자연과학	20			1
	식품영양학과	자연과학	20			2
	<u>외식조리학과</u>	자연과학	<u>18</u>			2
	<u>미용피부화장품학과</u>	자연과학	<u>14</u>			2
	임상병리학과	자연과학	20			1
의무행정학과	자연과학	20			1	
<b>합 계</b>		<b><u>262</u></b>			<b><u>262</u></b>	
	<b>부 칙</b>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

## 2.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가. 개정내용

- 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제1호 가목의 “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의 학과장으로 하며”를 “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학과의 장 또는 조교수 이상의 담당교수로 하며”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나목의 “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”를 “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며, 실험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”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다목 4)의 “연구활동종사자의”를 “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관한”으로 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“6)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한다.
- 같은조 같은호 같은목의 “6)”을 “7)”로 이동한다.
- 제12조(교육 및 훈련) 제1호 나목의 “3시간”을 “1.5시간”으로 한다.
- 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 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가목의 “영 제9조 제1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대상 근로자 나목의 “영 제9조제1항”을 “제11조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내용의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”을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제2호 교육대상 근로자 가목의 “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”을 “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의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대상 근로자 나목의 “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”을 “제11조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”로 한다.
- 같은 별표 같은호 교육내용의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”을 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”으로 하고, “연구개발 활동”을 “연구활동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제3호 교육내용의 “연구개발 활동”을 “연구활동”으로 한다.
-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의 “반기의”를 “반기 또는 연도의”로 한다.
-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.  
“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

###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와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와 같다. 1. 학과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	제7조(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(안)
<p>가. 각 학과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과의 장으로 하며, 학과 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실험실의 실험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.</p> <p>다.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실험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2)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3) 실험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4)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5) 실험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6) 그 밖에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</p> <p>2.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</p> <p>가.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별로 실험실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이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정·부의 2인을 둔다. 정은 해당 실험실의 담당(지도) 교수가 되며, 부는 조교 중에서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.</p>	<p>가. 각 학과 실험실의 <u>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 학과의 장 또는 조교수 이상의 담당교수로 하며</u>, 학과 내의 실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실험실의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.</p> <p>나. 실험실에서 <u>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·관리·감독하며, 실험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</u>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~ 3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) <u>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</u></li> <li>5)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) <u>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.</u></li> <li>7)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2조(교육 및 훈련)</b>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[별표1]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가. 교육훈련은 실험실안전관리책임자, 조교수 이상 또는 안전 전문강사가 담당</li> <li>나. 교육과정은 신규채용(신입생) 시 2시간 이상, 정기교육(신입생 및 재학생)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을 소유한 학과는 학기별 6시간 이상, 그 밖의 학과는 학기별 3시간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li> <li>다. 신규교육을 받은 신입생은 해당년도 1학기 정기교육을 면제한다.</li> </ol>	<p><b>제12조(교육 및 훈련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가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나. 교육과정은 신규채용(신입생) 시 2시간 이상, 정기교육(신입생 및 재학생)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실험실을 소유한 학과는 학기별 6시간 이상, 그 밖의 학과는 학기별 <u>1.5시간</u>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li> <li>다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
현 행	개 정 (안)
<p>2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실험실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신규교육(지정된 후 6개월 이내)은 18시간 이상, 보수교육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2년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)은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.</p> <p>3.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이수 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	<p><b>부 칙</b>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
현행	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교육과정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교육대상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교육시간</th> <th style="width: 55%;">교육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1. 신규 교육·훈련</td> <td>근로자 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</td> <td>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</td> <td rowspan="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</td> <td>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</td> </tr> <tr> <td>근로자가 아닌 자</td> <td>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</td> <td>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	1. 신규 교육·훈련	근로자 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	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근로자가 아닌 자	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
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										
	1. 신규 교육·훈련	근로자 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•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										
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		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												
근로자가 아닌 자	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												

구분	내용			
현행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
	2. 정기 교육·훈련	가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나.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 반기별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3. 특별안전교육·훈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호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</li> <li>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·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·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제2호의 정기 교육·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.</li> </ol>				
개정(안)	[별표1] 연구활동종사자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			
	교육과정	교육대상	교육시간	교육내용
	1. 신규 교육·훈련	근로자 가.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나.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근로자가 아닌 자 다. 대학생,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	8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 4시간 이상 (채용 후 6개월 이내) 2시간 이상 (연구개발활동 참여 후 3개월 이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표지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	2. 정기 교육·훈련	가. 제11조에 따른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나. 제11조에 따른 저위험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	반기별 6시간 이상 3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</li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
3. 특별안전교육·훈련	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안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</li> <li>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ul>	
<p>비고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현행과 같음)</li> <li>연구주체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·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해당 반기 또는 연도의 정기 교육·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</li> <li>(현행과 같음)</li> </ol>				